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중앙지방검찰청	보 도 자 료
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-530-4780/ 팩스 02-536-5410	2020. 12. 30.(수)

제 목	"범죄수익 더 빠르고 빈틈없이 환수하겠습니다" -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 시행 -

- 서울중앙지검은 내년 1. 1. 시행되는 형사시스템에 맞추어 **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**할 예정임
- ① **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신속히 동결**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, ②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**재산추적 지원시스템**을 강화하며, ③ **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**를 철저히 준비하겠음

1 범죄수익환수 업무 현황

- 서울중앙지검은 '18. 2.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이후, AOO 前 대통령 추징금 약 62억 원, 국정농단 사건 BOO 추징금 약 63억 원, '20. 10. 추징금 미납자의 해외은닉재산 253만 달러(한화 약 29억 원)를 각각 환수하였고, 매년 약 400~5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*를 취하고 있음

> * **보전조치** : 범죄수익 몰수·추징 선고 이전에 범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, 「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중대범죄 등에 대해 보전조치가 가능함

- 내년 1. 1. 시행되는 수사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범죄수익환수 분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자 환수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, 검찰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도 철저히 준비하고자 함

2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 개선

가. 보전조치 패스트트랙 시행

○ ① 범죄수익환수부에서 **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**하여 **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**하고, ②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**보전조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확인**하여 보전조치를 의뢰하면, ③ 범죄수익환수부에서 **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**하는 **협업 시스템** 마련

> ⇨ 대인조사 이전에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**「先재산동결·後대인조사」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 전환**

나. 재산추적 지원시스템 강화

○ 보이스피싱·유사수신·인터넷도박 등 **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**의 경우, **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**하여 **계좌추적, 금융정보분석원(FIU)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** 등을 적극 실시하여 은닉재산 파악

> ⇨ **적극적인 은닉재산 추적**을 통해 보전조치를 실질화하여 **환수 금액 증가**로 연결

다. 기소·공판 단계 조치

○ ① 기소 단계에서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**환수점검표를 작성·관리**하고, ② 공판 단계에서 **추징 구형사건**의 경우 **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**하여, 누락 시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하여 **보전조치 보완**

> ⇨ **환수실적 우수검사**에 대해서는 포상·내부 인사 등에 **인센티브 부여** 방침

3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시행

- ’19. 8.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으로 **보이스피싱 또는 유사수신·다단계 사기**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**몰수·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**해야 하고, 최근 시행령·시행규칙, 대검 예규가 정비됨

  -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**환부전담검사**로,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**환부전담수사관**으로 지정하고, 환부업무 시행 준비

【유사수신업체 ㈜○○○ 운영자에 대한 환부절차 개시 예정】

▣ 암호화폐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11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유사수신·사기죄로 징역 9년, 몰수(압수된 현금·수표) 및 추징 확정 (’20. 6.)

- ’20. 11. 피해자 49명이 압수된 현금·수표 4.6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몰수·추징 집행재산을 환부해달라는 취지로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

▣ 현재 환부절차 준비단계로 집행재산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중이고, 향후 환부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환부 진행 예정임

- 몰수·추징 집행이 완료되고 피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검사가 환부를 개시하고, 피해자 전원에게 통지하여(송달불능 피해자의 경우 공고로 대체) 환부 실시

환부 개시 ⇨ **피해자 통지** ⇨ **환부 청구** ⇨ **환부 결정** ⇨ **환부 실시**

- 아울러, 피해자 환부를 포함한 사무국 집행 기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**사무국 소관부서의 환수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·조정**하고, **수사관 2명을 충원**하였으며,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예정

  - 향후 환수업무 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사무국 내 환수·환부업무를 전담하는 「범죄수익환수과」 신설도 추진할 계획임 ⊠